

제45차 OECD/DAC HLM 결과

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 주관으로 제45차 개발원조위원회 고위급회의가 2007. 4.3-4 파리에서 개최되어 거버넌스 이슈, 원조 효과증진을 위한 파리선언 이행방안, 이주와 개발문제 등을 논의했음

I. 주요 내용

- 국제사회의 원조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파리선언 이행, 원조관련 거버넌스 이슈를 논의
 - 또한 이주를 통한 수원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송금을 통한 빈곤퇴치 등 개발과 이주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
- 한국 대표는 우리정부가 2015년 까지 ODA를 GNI의 0.25%(32억불)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

며 이와 함께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

- 또한 중견 공여국으로서 우리의 ODA정책에 대한 DAC회원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, 금년 서울에서 9월 개최 예정인 Non-DAC 공여국 정책대화에 기존 공여국, Non-DAC공여국 및 BRICs 등 신흥공여국들이 모두 참석하여 원조효율성 제고에 대한 파리선언과 2008년 개최예정인 아크라회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OECD회원국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

- 금번 제 45차 회의는 작년에 개최된 개발환경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'개발과 환경'에 이어 '개발과 안보', '개발과 이주' 등 개발원조정책의 일관성 제고(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)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

II. 상세 내용

1. 취약국가 대책 및 안보와 개발원조 Session

가. 룩셈부르크

- 수원국의 안보는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개발, 외교, 국방 삼자간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접근해야 할 문제
-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초투자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

나. EC (Manservisi 개발총국장)

- 수원국별로 상이한 취약성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
- 수원국 주도로 국민들에 대한 기초 서비스 제공, 역내 지역기구와 협조하여 역내 정치구도를 반영한 접근이 필요
- 안보시스템개혁(Security System Reform) 과정에서 재원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

다. 영국 (Chakrabarti DFID 차장)

- 취약국가 이슈관련 도전으로 수원국 현지에서 DAC의 논의를 실제로 실행하는 문제, 성과 도출, 신흥공여국과 기존 공여국간 협조를 통한 취약국가에 대한 원조의 효율성 확보가 중요

- 취약국가 이슈에 대한 범정부적 이해를 제고하여 장기적인 지원을 통한 성과 도출이 필요

라. 일본 (베소 국제협력국장)

- 취약국가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인간안보(human security) 개념의 도입을 제안

마. 캐나다 (CIDA 총재)

- 취약국가의 경우 원조전달(aid delivery)이 어렵기 때문에 취약국가와 5년 단위의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여 장기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
-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의 성공여부는 공여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, '원조의 성공여부'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

바. 미국

- 수원국의 민주주의 구축을 위해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(PDG)를 추진
- SSR에 있어서 국방분야 지원에 대한 투명성 강화, 인권개념의 도입이 필요

사. 프랑스 (Etienne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총국장)

- 취약국가를 결정할 기준과 국가의 취약성을

분석할 매트릭스가 중요하며, NGO를 통한 지원 등 상황별로 올바른 지원 방법이 필요

아. 스위스 (Fust 외교부 개발협력국장)

-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인도적인 지원과 군사작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간의 구별이 필요

자. 노르웨이 (Solheim 외교부 국제개발장관)

-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을 예로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시 수원국내 정치역학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공여국의 선호(preference)를 가급적 배제해야 함

차. 호주

- SSR 논의를 위해 개발, 외교, 국방간 고위급 국제회의를 개최해야 함

카. 오스트리아 (Freudenschuss 외교부 개발협력총국장)

- 특정한 상황에 대한 사회의 탄력성(resilience)를 강화하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

타. 독일 (Wieczorek-zeul 경제개발협력 장관)

- 자원이 많은 수원국의 경우 국가의 취약성이 자원을 둘러싼 부패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취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(Extractive Industry Transparency Initiative)를 강화해야 함

파. 슬로바키아

- UN안보리 의장국 수임시 SSR을 중요의제로 다루었고, 각국이 SSR의 중요성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상이
- SSR을 위해 공여국간 협조, 지역기구의 활용, 유엔의 역할 강화가 필요

하. DAC 의장

- 취약국가와 SSR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외교, 개발, 국방분야간 범정부적 접근법에 대한 고위급회의의 준비가 필요

2. 반부패와 개발원조 Session

가. 네덜란드 (Koenders 외교부 개발협력 장관)

- 부패는 bad governance의 징후이며 자원의

불평등한 배분(unfair distribution of resource)을 야기하여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

- 유엔반부패 협약의 이행, 각국간 형사사법공조(mutual legal assistance)를 강화해야 함

나. 노르웨이

- 수단 남부지역의 경우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자원개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공재정관리(public financial management) 시스템 구축이 중요
- 반부패문제는 G-8, 유엔 고위급 회의 등에서 다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

다. 스위스, 벨기에

- 유엔반부패협약 비준을 위해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

3. 국제지원구조 및 유엔개혁 Session

가. Dervis UNDP 총재

- 유엔 일관성 제고를 위한 패널보고서에 따라 8개국에 대한 시범사례(pilot case)가 진행 중
- 동 결과를 바탕으로 일관성(coherence) 개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엔개혁을

진행할 예정

나. 캐나다

- 과거 피어슨 보고서나 잭슨 보고서가 지적한 UNDP의 조정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실천적 접근법이 필요

다. 미국

- 패널보고서의 전체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환경, 인권, CERF에 대한 지나친 강조, MDG Funding 메카니즘 등 일부에는 이견이 존재

라. 스웨덴 (Stymne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장관)

- 양자지원과 다자지원의 조화의 관점에서 스웨덴 원조의 유엔 pilot case에 대한 조화가 필요

마. 독일

- G-8 국가들이 개발원조와 관련 '99년 부채탕감문제, 글로벌 펀드의 설립, '05년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의 증대와 부채탕감 정책을 추진 중
- 금년 G-8의 주제로 성장과 책임(Grow & Responsibility)을 설정, 세계경제와 아프리카

에 대한 영향,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공재 확보 등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

- 파리선언이 수원국들에게 주는 의미와, 신흥 공여국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과, 실제 이행의 결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

4. 파리선언 이행을 위한 정치적 도전 Session

가. DAC 원조효과작업반 의장

- 파리선언 중간점검결과 공여기관의 수원국 현지 사무소의 자율적인 권한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, 조건 없는(untied) 원조화 진척이 느리며, 수원국 현지 제도 활용 부족
- 파리선언에 대한 공여국들의 고민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

나. 아일랜드 (Lenihan 외교부 해외개발 및 인 권담당 차관)

- 파리선언은 원조구조의 good governance 구축을 위한 유용한 도구
- 공여국 국내에서 파리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원조기관들이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시행해야 함

다. 일본

- 파리선언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충분한 지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

라. DAC 의장

- 파리선언 성과 측정을 위한 설문에 덴마크 등 4개 DAC 회원국이 참여하였고, 여타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

마. 핀란드 (Majanen 외교부 개발정책총국장)

- 파리선언 이행이 공여국 의회 및 국민과 원조 기관간 의사소통의 문제 (communication problem)
- 파리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여국간 원조의 조화 및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위해서 EU Code of Conduct를 준수해야 함

바. 벨기에 (Adriaensens 외교부 개발협력총 국장)

- 파리선언이 분권화된(fragmentated) 원조구조에 대한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 제공
- 공여국 국민과 국회에 대해서 파리선언 이행 결과를 보여주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음
- 파리선언 점검에 있어서 원조의 조화(harmonization) 이행 점검이 부족하며, EU Code of Conduct가 여타 공여국에게도 확산

될 필요가 있음

사. 폴란드

- 파리선언 개념을 포함한 원조계획을 작성 중
- 최근 OECD 개발센터 주관으로 폴란드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원국에 대한 합의를 모색 중

아. 프랑스

- 파리선언 이행점검은 특정 국가를 비판(naming & shaming)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
- 점검결과를 활용하여 공여국 국민과 의회에 대한 설명 자료로 이용할 예정

자. 호주

- 파리선언 이행점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리선언의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, DAC 통계작성반의 활동이 필요

차. 한국

- 파리선언에 대한 신흥공여국들의 명확한 인식 일치가 필요
- 파리선언에 대한 각국의 기여를 제고하기 위

해 오는 9월 서울에서 제2차 non-DAC 공여국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공여국과 신흥공여국 간 공동의 이해와 협력강화가 필요

카. 덴마크 (Tornaes 외교부 개발협력장관)

- 파리선언은 기술적인 면이 있는데 정치인에게 는 실제 결과가 중요하며 원조 전달과정은 복잡해서 안 됨.

타. 미국

- 파리선언 이행에 있어서 수원국 조달시스템 활용을 위해서는 수원국 거버넌스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가 필요

파. 네덜란드

- 파리선언 이행을 위해서 공여국들이 원조에 대한 flagship을 포기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
- 신흥공여국들도 기존의 파리선언 체제에 순응해야 함

하. DAC 의장

- 파리선언 이행이 원조의 flagship을 약화시키지만 원조의 효과성 제고측면에서 공여국 국

민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음

- 중국 등 신흥공여국의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서울에서 개최예정인 제2차 non-DAC 공여국 회의가 중요

5. 이주(migration)와 개발 Session

가. Gurria OECD 사무총장

- 이주문제는 개인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며 이주민 통합(integration)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
- 이주와 개발간 상관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

나. 덴마크

- 외교부와 국제이민부(Department of International Migration)간 T/F를 구성하여 인도적인 지원 측면에서 케냐와 소말리아에 이주민 수용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이 필요

다. 독일

- 선후진국간 고급인력의 순환 교류(circular migration)를 통해 수원국 경제개발 촉진 가능

라. 스페인 (De La Iglesia 외교부 국제협력단 사무총장)

- 이주문제는 선진국 관련부처간 범정부적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정책사안
- 이주자 송금액(remittance) 수수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으며, 스페인 정부는 수원국 정부와 송금제도 개선을 협의 중
- 이러한 노력은 불법 송금을 줄이고 송금을 위한 공식 채널을 확보하여 해외 송금액에 대한 수원국의 통제를 통해 수원국 경제발전에 기여 가능

마. 개발센터

- 세계화 진전에 따라 자본, 상품, 서비스의 이동은 논의되지만 인력의 이동은 논의가 없음
- 선진국 내 이주민 그룹(diaspora)이 개도국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 가능
- 개발과 이주는 개도국 숙련노동자의 유출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비숙련 노동자의 송금이 수원국 절대빈곤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상관관계 존재
- 이주문제는 이주가 수원국의 납세자를 줄이고, 인적자원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수원국의 경제개발전략에 포함되어야 함

바. 영국

- 이주문제는 내무부, 복지부, 국제개발부 등 관련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정책사항
- 말라위의 많은 보건인력들이 영국에서 활동하여 말라위의 보건 시스템에 큰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 소개

사. 스웨덴

- 이주와 개발문제를 개발정책의 일관성(policy coherence)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
- 이주문제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나 외교부와 협조관계 구축이 필요함
- 여성 이주자가 남성보다 더 많은 송금을 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이주와 개발문제에 있어서 성평등(gender) 측면을 고려할 필요를 제기

아. 벨기에

- 7월 벨기에에서 이주문제관련 유엔 글로벌 포럼을 개최예정이며 이주와 개발문제, 고령화 사회와 이주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

자. OECD 노동사회국

- 이주문제는 이주민의 사회통합, 수원국 고급 인력 유출(brain drain)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

6. 안보관련 지출예산의 ODA 계상문제

가. 스웨덴

- 안보관련 활동의 ODA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관련 활동과 개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 필요

나. 이탈리아 (Sentinelli 외교부 차관)

- 6개 안보관련 활동의 ODA 계상이 2년 전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PKO 활동, 비군사적 활동에 대한 지원문제가 최근 논의 되고 있는데 ODA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

다. 포르투갈 (Cravinho 외교부 외부협력 차관)

- 안보관련 활동을 너무 광범위하게 원조에 포함할 경우 공여국내 재원배분 시 개발원조 고유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예산이 증가할 위험이 존재

7. 기타

- 가. DAC은 신임 DAC 의장 선출절차관련 7월까지 입후보, 회원국의 인터뷰 절차 이후 11월 신임 DAC 의장을 선출할 예정

나. DAC은 원조조건 철회(untied) 이슈와 관련하여 수원국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이며 최근 호주정부의 원조 언타이드 결정에 긍정적

대한 2001년 언타이드 권고의 적용문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문의(프랑스, 스페인은 동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개진)

■ 최빈국은 아니지만 고채무빈곤국가(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)에 속하는 국가에

[자료 : 주오이시디대표부]